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1 선고 2020나1076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]

---

## 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1 선고 2020나10762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14 선고 2019가단5058526 판결

## 전문

원고, 피항소인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7. G

8. H

9. I

10. J

11. K

12. L

13. M

14. N

15. O

16. P

17. Q

18. R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

담당변호사 김성환

**피고, 항소인**대한민국

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

담당변호사 정한결

**변론 종결**2020. 9. 16.

**판결 선고**2020. 10. 21.

**제1심판결**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14. 선고 2019가단5058526 판결

## 주 문

1.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,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X, Y 토지'라 한다) 중 별지 1. 원고별 상속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(이하 'Z 토지'라 한다) 중 별지 2. 원고별 상속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Z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(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X, Y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도 인용하였으나,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)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,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추가 판단

#### 가. 피고의 주장 요지

피고는, Z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선대인 U의 제적등본상 본적지는 "경기도 양평군 AA리"인 반면,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 U의 주소지는 "경기도 양평군 BN리"이므로, 원고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은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#### 나. 판단

1) 그러나 갑 제1, 2, 7, 13호증의 각 기재, 제1심 법원의 양평군 S면, T면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들의 선대인 U과 토지조사부상 U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.

① Z 토지의 토지조사부는 1910년에서 1918년 사이에 작성되었고, 위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 U의 주소지는 "경기도 양평군 BN리(이하 도와 군의 명칭은 생략한다)"이다. 그런데 1914. 3. 1.

"BO면과 "BP면"이 통합되어 "T면"으로 행정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, "BO면"과 "T면"은 사실상 동일한 행정구역이고, 위 토지조사부는 1914. 3. 1.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.

② U의 제적등본과 X, Y 토지의 임야조사서(1916년에서 1924년 사이에 작성됨)에 의하면, 원고들의 선대인 U은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인 1914. 3. 1. 이전에는 "BO면"에 거주하다가 1918년 "T면(변경 전 BO면)"에서 "S면"으로 이사하였다.

③ 토지조사부가 작성된 1910년에서 1918년 사이에 만 20세 이상의 성년인 자로서 "BN리"에 U과 동명이인은 존재하지 않고, 임야조사서가 작성된 1916년에서 1924년 사이에 만 20세 이상의 성년인 자로서 "AA리"에 U과 동명이인도 존재하지 않는다.

④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원고들의 선대인 U은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에는 "BO면(변경 후 T면) BN리"에서 거주하다가 임야조사서 작성 당시에는 "AA리"로 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, 그 무렵 동명이인이 존재할 가능성도 없다.

2)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판사이종광**

**판사박상수**

**판사정은영**

**별지**